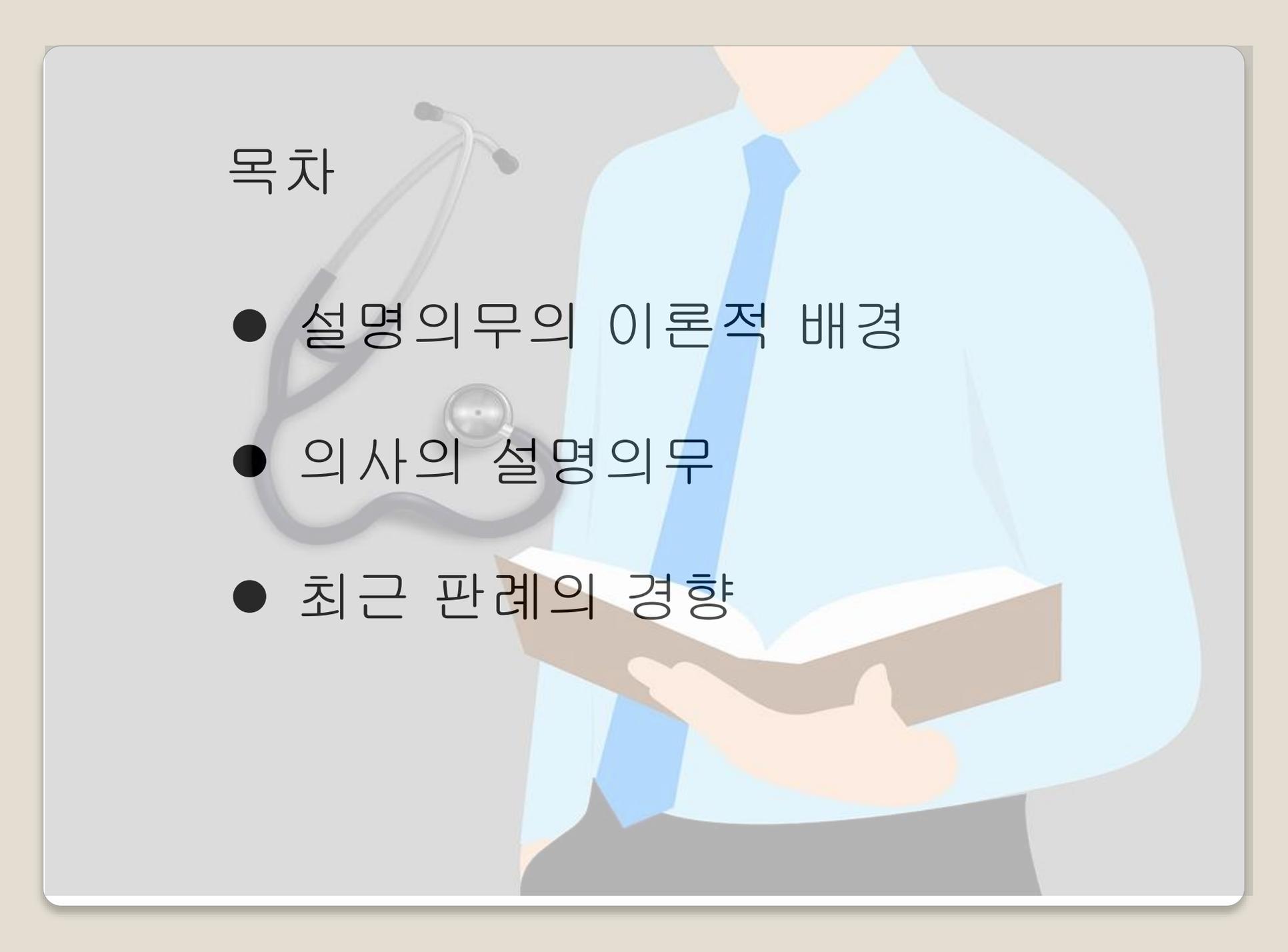


동의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설명의무와 판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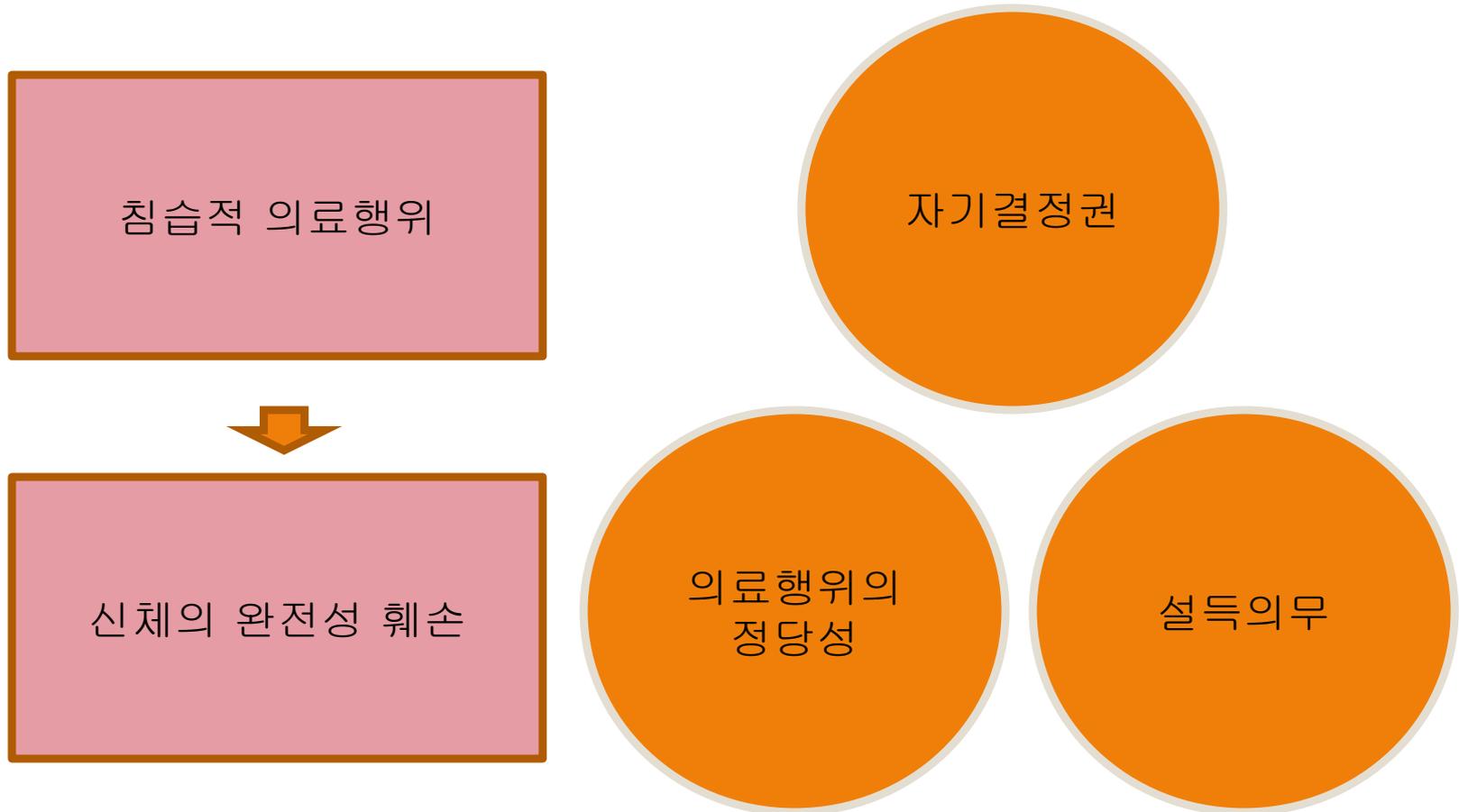
J/C/I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동방봉용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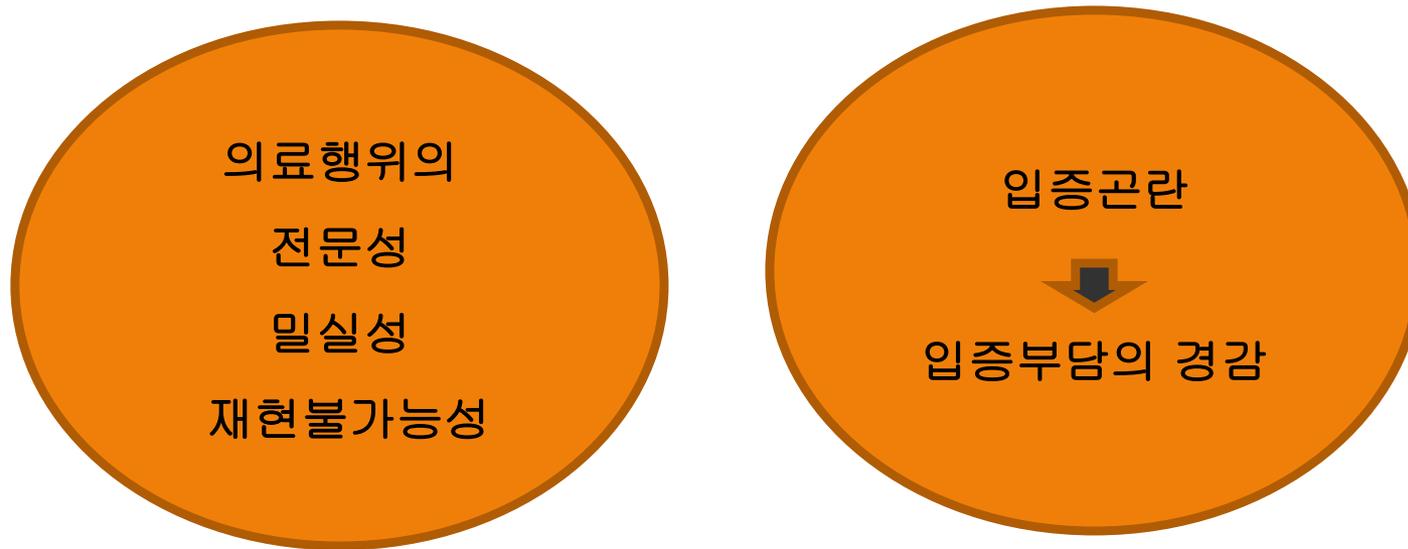
- 설명의무의 이론적 배경
- 의사의 설명의무
- 최근 판례의 경향

1. 설명의무의 이론적 배경



의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환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조력할 의무가 있다(설득의무).

설명의무 위반 이론의 소송상 도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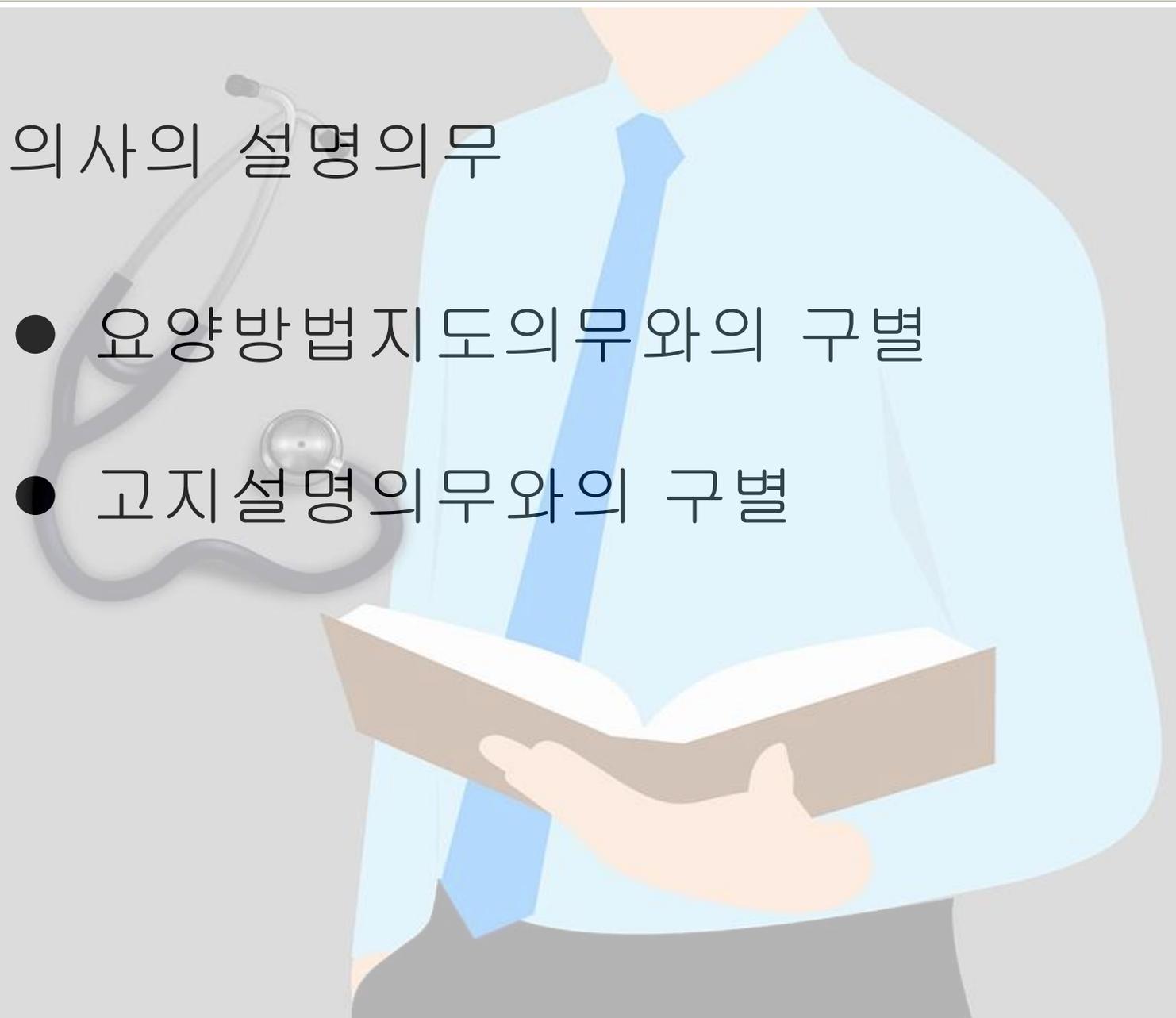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다248919 판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여 헌법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환자에게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하여 줌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라는 사법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실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

- 영양방법지도의무와의 구별
- 고지설명 의무와의 구별



1-1. 영양방법지도의무와의 구별

의료법 제24조는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영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의료법은 의사에게 위와 같은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영양의 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설명 의무는 그 목적 및 내용상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지도설명 의무 위반과 생명·신체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즉, 지도설명 의무는 주된 급부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종속적 부수의무로 이해되며, 지도설명 의무 위반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료과실로서 진료상 과실과 같이 취급된다는 점에서 설명 의무와 구별된다.

1-2. 영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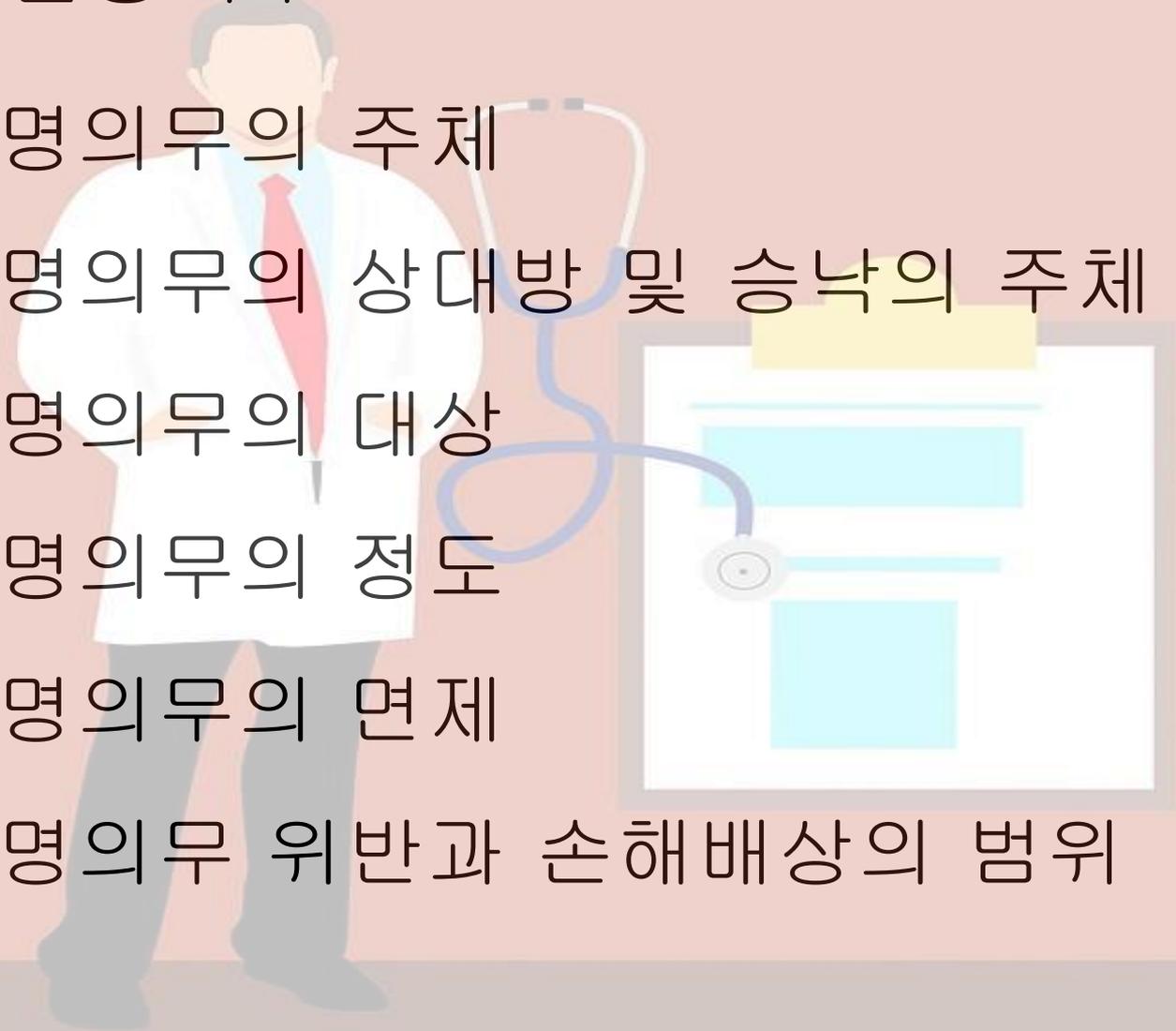
- 1) **에탐부톨(결핵약) 사건** - 결핵환자에게 결핵약 투여후 시각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상증세가 있으면 보건소에 나와 상담 검진하라, 약품설명서에 그 부작용에 관한 일반적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다64067 판결).
- 2) **연탄가스 사건** - 연탄가스 중독으로 응급실 내원 후 퇴원. 치료 후 퇴원할 당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영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함. 자기 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또다시 중독된 사안(대법원 90도 2547 판결).
- 3)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 후 혈종 발생 사안** - 혈종의 발생 가능성이나 그 증상, 위험성, 대처방법 등에 관한 설명, 지도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혈종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초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2일이나 지체하여 내원(서울고등법원 2015나2001305 판결).

2. 고지설명 의무와의 구별

고지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는 무관하게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의무로서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이다. 순수한 진단계약에서는 주된 의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건강검진은 순수한 진단계약의 일종이므로 건강검진 결과를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고지 설명하여야 한다. 고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환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유방보형물을 삽입했던 환자 A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하였다. 그런데, 초음파검사 결과 유방 보형물의 파열소견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건강검진은 순수한 진단계약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소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고, 파열된 유방 보형물이 체내 잔존하게 되면 감염의 위험성과 구형구축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설명 의무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유방 보형물 파열에 의해 신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 설명의무의 주체
 - 설명의무의 상대방 및 승낙의 주체
 - 설명의무의 대상
 - 설명의무의 정도
 - 설명의무의 면제
 -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1. 설명의무의 주체

설명 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담당 처치 의사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 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충분하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그러나,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처치 의사 또는 다른 의사가 아닌 간호사(비록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에 의한 설명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질병의 원인의 불확실성, 의료행위에 따른 부작용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인 듯 하다.

2. 설명의무의 상대방 및 승낙의 주체

설명 의무의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 또한 환자 자신이 하여야 한다. 환자를 제외한 다른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다.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설명 의무의 상대방이 되고 승낙을 하는 주체가 된다.

2-1. 사례

- 1) 수술 전날 환자의 시숙에게 설명한 경우(96다37862 판결)
- 2) 성년인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전해들은 자식들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자식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다16781, 167987 판결).

2. 설명의무의 상대방 및 승낙의 주체

2-1. 사례

3)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인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사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의 나이, 미성년자인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해 정도에 맞추어 설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 218925 판결)

3.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종류

의사의 설명의무는 수술이나 수혈, 마취에만 국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거나 나쁜 결과 또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이다(대법원 94다27151 판결).

- 투약행위
- 진단, 검사
- 성형수술행위
- 이상증세 발견시
- 수혈

3-1. 투약행위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다25885 판결).

3-2. 진단, 검사

정기검사 시기에 맞추어 자궁암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처음 찾아온 의뢰인에게 세포진 검사와 질확대경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검사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직검사까지 실시한 의사의 행위가 과잉진료 내지 설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대법원 97다56761 판결).

3-3. 성형수술 -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의료행위
-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 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다94865 판결).

3-4. 이상증세 발견 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다13208, 13215 판결).

3-5. 수혈

수술 후 수술중의 출혈로 인하여 수혈하는 경우에는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은 당해 수술과는 별개의 수혈 그 자체에 특유한 위험으로서 당해 수술 자체로 인한 위험 못지 아니하게 중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그 수술에 대한 설명, 동의와는 별개로 수혈로 인한 위험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6다7854 판결).

4. 설명의무의 정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

갑 병원 의료진이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을의 심장질환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을의 위와 같은 경추부 질환이 악화되어 경추부 척수병증 또는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을에게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의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결과 을이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위와 같이 경추부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마비의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은 위 수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위 수술로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신체·건강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술을 받지 않을 경우에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 등과 함께 환자인 을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야 한다(대법원 2018다217974 판결).

4. 설명의무의 정도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 수술당일 10:30경 보호자에게 환자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설명을 하고, 같은 날 11:10경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고 수술을 마친 사례

5. 설명의무의 면제

- 긴급의료나 응급의료시
- 침습행위가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의 경우
- 추정적 승낙의 경우
- 산부인과에서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의 경우
- 진단상 과실 없이 진단하지 못한 질환의 경우

5-1. 긴급의료나 응급의료 시

위 원고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하에서 의식이 회복되기 전까지의 투약에 관한 한, 사전의 설명이 불가능하여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그 때까지 소외 1의 설명의무를 부인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수긍된다. 그러나, 위 원고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치료의 경과와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92다 25885 판결).

의사가 요추천자를 실시함에 있어 최악의 경우 뇌탈출에 의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고열, 두통, 경련증세, 강직증세, 의식혼미 등 뇌병증의 임상증상이 보이고, 특히 목에 강직 증세가 나타나는 등 뇌막염이나 뇌염일 가능성이 커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상황 아래에서는 그에 따른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다9301 판결).

5-2.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해당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 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다41069 판결).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침습행위가 아니거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소론과 같이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등 침습(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94다27151 판결).

5-3. 추정적 승낙의 경우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의사의 면책은 의사측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인데,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의 심장질환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는 가까운 장래에 대동맥판막치환, 상행 대동맥확장 및 좌측주관상동맥입구확장 등의 개심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또 원고가 그와 같은 개심수술을 받을 생각으로 위 의료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위 개심수술에 수반될 지도 모르는 부작용까지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그 수술을 승낙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4다3421 판결).

5-4. 산부인과에서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질식분만을 하게 되면 산모 또는 태아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모로 하여금 제왕절개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대체적인 분만방법으로 제왕절개수술이 있다는 점 및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상황이 아니라면 질식분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원칙적인 분만방법이므로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다62505 판결).

5-5.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인 경우

이러한 의료진의 설명은 의학지식의 미비 등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환자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경우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 여부는, 해당 의학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환자의 교육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70906 판결).

6. 설명의무의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사망 등의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맺음말

- 설명의무의 이행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소통을 통한 신뢰관계 형성의 도구로서 기능
- 환자의 자기결정권, 알권리 보호
-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도 함께 논의되어야
-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 그 전제로서 충실한 설명의무의 이행은 상호간 신뢰를 형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OONJANG

J/C/I
법무법인문장

변호사 동방봉용